

건강의 권리와 의무

醫療人的 位置에서(II)

李 笑 雨

<서울의대 간호학과 조교수>



국민건강의 一翼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써 건강이란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겠거니와 자신의 의무가 무엇이며 권리가 무엇이나 함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의료인들이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의무가 feedback으로 投入되는 것이 국민에게는 건강에 대한 권리요, 의료인이 의무수행중 받을 최소한의 권리가 환자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의무로써 지켜지지 않나 생각해 봄은 흥미있는 일인 것이다.

위대한 洞察力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요즈음 관심이 깊은 우리나라 社會福祉 문제중 의료사업이 최종적으로는 국민건강 수준향상을 위해서 있다 함에 異意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의무(health responsibility), 건강권리(health rights), 건강시민(health citizenship), 건강양심(health consciousness)등의 단어가 차차 우리의 친숙한 단어로 되가고 있는 것 같다. 차체에 국민들의 건강

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고찰해보는 것은 간호사업을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가깝고 효율적인 건강의 안내자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건강에 대한 개념

그간 많은 사람들이나 연구기관에서 건강을 정의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만한 방법으로 건강이나 질병에 대해 정의한 理論的 가능성은 불확실하였다. 비록 가장 잘 정의되어졌다고 알려진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생산적이고 유익한 건강습관을 자극할 수 있는 意味나 효과면에서는 의심이 간다. 더욱 최근의 건강의 정의는 인생 삶 자체의 質에 더 強點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몇몇 크게 받아드려지고 있는 정의를 大別하면, 다

만 질병으로 부터의 해방으로써 표현되어지거나 또는 증가하는 성취감의 규준으로써 인생의 質을 따라 건강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 인간 존재의 최후. 사실부터 얘기가 쓰여져 있는 구약성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병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 語根 hih을 찾아 질병의 뜻을 찾게 되는데, 거기에는 “병은 허약한 상태, 맥풀린 상태, 피곤에 지친상태, 쇠약해진 모든 생명력의 상태”를 말한다. 그의 “사고를 당해서 입은 부상과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병과 심리적인 비정상상태”라고 한다. 또 건강의 의미는 “야채를 찬양하게 되는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의미가 나타난다. 즉 건강하다가 병이 들면 그때마다 야채의 맛을 새롭게 경험해야 했고 이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現代의 概念에서는 병을 예방하는 要因들이 반드시 건강을 증진시키는 要因과 一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M. Arnold씨도 인간의 많은 관심이 질병에 대한 관심으로 부터 좋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능력으로 쏠리게 되고 건강을 위한 前評價는 무엇을 할 수 없는 능력이나 질병없는 상태만을 위하기 보다는 점점 긍정적인 건강개념을 위해 추구되어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하는데 기로가 되는 것으로 건강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흔히 臨床街에서 환자를 앞에 놓고 안타까움이 極에 달한 치료자들은 환자의 無識을 호통치고 나무라는 것이 종종 話題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知識과 건강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란 다만 意識的 意向에 의해서만 건강을 支持하는 目的이 된다.²⁾ 그러므로 각개인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要素가 오히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결정됨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차사고와 같은 부

주의는 물론 감기 등등의 질병은 개인의 생활이 평형을 유지못할때 일어난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강의 정의가 어려움이 일어나며, 이것은 여러 要因이 다른 각각의 생활권에서 存在하는 유기체간의 同一性유지가 어려워져서 뿐만은 아니다. Dubos가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삶으로 부터 여러가지로 다른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건강을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또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Frankl은 건강은 인생의 일부분이 쾌락의 원칙에서 자기패배 된 것이 우세하게 나타날때를 기해서 사용되어지는 낱말로 생각하고 있다. 즉 건강이란 낱말이 인생의 目的이 되고 그것 만을 늘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 열심히 몸을 닦는 사람은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꼭 쾌락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요 이처럼 건강에 불투하면 이미 그 사람은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건강은 항상 理想的 상태로써 정의되어진 것 만은 사실이다. 다만 目的과 方法論의 變化가 있을 뿐이다. 이는 Jones가 말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시더적 고찰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즉 19C 이전의 의학적 보호와 지식은 오로지 질병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건강에 기여하는 바는 아주 적었지만 그것이 곧 건강으로 정의되어졌고 20C에 들어서서 점차로 건강과 생활자체의 증진을 위해 의학적 기여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건강한 생활을 건강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건강의 개념은 환경의 모든 특성에 영향을 받고 반응한다. 이제까지 나온 개념고찰을 종합해 보면 건강은 가치판단, 객관적 상태, 문화요소, 관련개념, 주관적 용어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단어로써 유전 교육 생활조건까지가 모두 정의하는데 영향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건강의 권리

여기에서 권리의 정의를 저자는 法的用語로써 해석하기 보다는 倫理的 측면을 고려하여 얘기 하고저 한다. 즉 “남에게 대하여 마땅히 기대 요구할 수 있는 정의”³⁾로써 풀이하고저 한다.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사회학적 인간론을 살펴 보면 “피조물에 대한 주권”의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석을 Ludwig Köhler가 一部 표현한 것중 이러한 것이 있다. “인간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눈속에 먼지가 들어오는 일이든지, 홍수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일이든지, 그런 것들을 극복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극복하기에 너무 사소한 것도 없고 너무 중대한 것도 별로 없다.” 성서에서는 인간이 하느님 모상으로 存在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위탁은 아주 귀하게 존중되고 달성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여러작도로 위기를 만나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자나 사상가 예를 들면, 토인비나 로다 클럼의 D.H.메도우즈 같은 사람, 그중 로마클럼의 메도우즈의 여러학자들은 2,000년 까지의 세계모형을 數値를 나열해 가며 人類의 危機를 경고하고 있다. 그중 식량과 汚染의 水準이 인간의 건강유지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도표로써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資本에 힘입는 바른 것으로 내다 보고 있음은 오지음 知性人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철학적 思考에서건 상품적 가치에 의해서건 건강문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인류 또는 국민의 건강권리는 비례할 것이다. Hubbard는 뚜렷한 目的으로 보다는 권한이 부여된 가치로써 건강을 설명한다. 건강을 성취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따르는 상황 안에서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용 발괄해야 한다. 이러한 잠재력은 여러요인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시대적 건강 개념에 의해 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건강개념에서도 말했거니와 20C 이전의 인간에게는 오직 병이 없기만을 만족했다면 금세기에 들어서는 경제적 성장과 기술의 고도화에 편승해서 自然的인 건강개념 변화도 있겠지만 의료서비스자체의 건강개발에 의해서 인류 또는 각국의 국민 건강개념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는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 자신들이 우선 건강에 대한 나의 문제가 어떤 입장이며, 그로써 마땅히 지켜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병행한다는 기초적 얘기는 뒤에서 잠깐 얘기 되어져야겠다. 이렇게 건강을 인식하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잠재력을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Paul Tillich는 그의 저서 “The Meaning of Health”에서 건강은 그 자체안으로는 인간에게 그리 필수적으로 생각해야할 개념이 아니었지만 건강치 못한 상태, 즉 질병의 개념으로 해서 깊이있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존주의 학자들이 그들의 사상을 전개함에 있어 의학을 항상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게된 원인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실존주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存在의 의미는 특히 인간을 가리키며 그것도 現存하는 인간이요. 無 즉 죽음의 상태는 현재의 가장 고통스런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간호에서 個別看護의 이론이 성립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하며 個人的 존중성, 그가 所有하고 있는 慾求의 귀중함은 同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個人的 慾求중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건강문제라고 함은 이미 Maslow가 지적한 바이다. 건강척도에서 본 인생 과정을 Tillich는 두가지 기본이 되는 辯證法的 要素 즉, 同質的 自己와 變化된 自己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同質的 自己라 함은 건강상의 아무 변화없이 계속 유지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으로부터 발견되는 것이요, 變化된 自己는 하나의 질병상태로 보고 이 상태는 하나의 범우주적 인생의 모호한 증상으로 보았다. 즉 모호한 증상이라 함은 창조적이어야 할 인생과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뜻과 통합되어야 할 과정이 분리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인생은 바로 그 자체가 이러한 모호한 증상을 이겨 내는데 근본이 있다고 말하고 이 모호한 증상의 추방, 즉 건강을 지키고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가 없는 인생은 가련한 인생으로 보고 있다.

전화론적 인도주의자들은 건강과 질병을 유전과 환경상호관계에서 유기체가 적용하는 능력에 관해서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와 인간의 건강상태는 內的환경과 外部의 복합환경사이에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적용능력이 성공적일때 그 인간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학자 Barton Weisbrod가 개인은 자기건강을 경제적으로 조절하는데 매우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집단과 결정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거나와 마찬가지로 外部의 환경에서 얻어지는 권리어하에 따라서 적용능력은 성공적이 될 것이다. 社會는 국민에게 存在하는 의학지식을 충분히 공급해줄 의무가 있다. 이는 서문에서도 잠깐 얘기한 바와 같이 곧 국민의 권리가 되는 것이다. 개인건강 관리에서 부터 가정건강 유지까지 필요한 요구를 전문인으로 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결여된 공급은 제도적으로 규제된 집단의 도움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약을 하나 사러간 사람이 약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증상을 열심

히 얘기하는 것은 약사에게 바라는 바가 단순한 商業的 기대만이 아닌 전문적 지식과 배려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에 있는 의료인이건간에 이 전문적 기대가 부여 되어있으며 국민은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높아만 간다는 병원의 문턱은 경제지수만을 가리키는건지 건강諮問으로써 전문인의 위치가 遠隔先上에 있기때문인지에 대해 점차 反省해 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Dubos는 질병은 인간이 타고난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상황이 둘러쌓여 있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도와주는 것이 전문인의 역할인데 더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환자가 불완전한 세계에서 순응하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존재나 보상을 성취하고자 불완전한 인간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건강상태라고 말할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이상적 조건이 건강임을 말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란 인간에게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무시되거나 輕視되어서는 아니된다.

1973년 미국병원협회에서는 조신스럽게 환자의 병원당국 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권리추장을 위한 法案을 12가지로 문장화 하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환자는 ① 심사숙고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치의로부터 자신의 질병진단에 대한 완전하고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③ 질병치료와 과정에 앞서 서약상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④ 法에 의해 정해진 범위까지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치료상 필요한 개인문제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⑥ 치료상 필요한 모든 기록과 커뮤니케이션은 믿을 수 있게 지켜져야 된다.

⑦ 병원의 봉사시설은 타당한 환자의 요구에 맞게 꾸며지도록 기대할 권리가 있다.

⑧ 치료상 필요한 다른 치료기관과 교육기관에다가 자신의 치료를 담당할 병원과의 관계를 알아볼 권리가 있다.

⑨ 만약 병원에서 자신의 치료를 위해 인간실험을 해보라고 제의할때 거절할 권리가 있다.

⑩ 타당한 치료의 계속성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⑪ 치료비에 대한 근원을 알아보고 따져볼 권리가 있다.

⑫ 병원의 규칙과 질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몇가지 환자의 권익을 위해 전문단체 스스로가 권리주장을 인정해 주며, 덧붙여 이에 따르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은 비단 글속에서만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각주마다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책자화하여 직접 입원되어 있는 환자에게 나눠주고 있음을 필자는 미국 체류동안 보았다.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관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보다 앞서 건강권리의 중요성과 必要性 인식이 절대요소라고 생각한다.

3. 건강에 대한 의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무 또한 法的 측면에서 보다 도덕윤리적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아직 生活化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法的 의무는 극히 적고 드물기 때문이다.

Ennes Howard는 건강시민에서 개인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① 자신의 충분한 삶을 선택하는데 최대한으로 하기위해 생활양식의 형태나自己 스스로에 대해 알아볼 책임이 있다. ② 자기 생활안에서 적당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인중이나 지역사회안에서 건강봉사 기관이나 건강을 위한 전문인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지역사회 건강계획이나 결정단계, 우선계획등에 생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좋은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개인적 생활양식을 용감하게 변화시킬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당뇨병 환자가 그의 병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飲食, 운동등의 습관을 변화시킬 의욕이 있어야 한다. 건강과 질병이 함께 二重存在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實在하지 않는 한 개인은 바람직한 표준방향으로 생활자체를 움직이며 개선해 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이외 전문직 건강요원의 활용성에 대한 의무다. 병원사회에서 부터 cap에 대한 인식보다는 실험용 gown 착용자에 대한 권위주의의 사고방식 형성은 입원하던 지역사회내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전문직 안내자를 잃고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려 속담에 “병을 자랑하라”는 것도 적당할 시기에 필요한 건강의 助劑를 습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는 것 같다. 주약성서에도 “나의 아들아, 네가 병이 났을때에 지체하지 말라, 오직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라, 그는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에게도 출입을 허락하여라. 의사를 물리치지 말아라, 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⁴⁾라고 하였듯이 주관적 관찰에 의한 보고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인간적 존경을 건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보낼 의무가 있다. 성서에 “병의주인”에 관한 얘기에서 “의사를 그 직무에 합당하게 존경하여라, 의사에게도 하느님이 그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⁵⁾라고 의료인의 대표적 표현을 의사를 빌어 나타내고 있다.

제도적 의무규정을 미국병원협회에 환자 권리 규정과 더불어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①정직한 病歷의 보고, ②치료자와의 약속시간, 그 약속사항 엄수 ③치료비의 신속한 지불 등으

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보는 각종 서약서는 환자의 권위를 위해 만들어 졌다고 보기에 회의적이나 아등든 여러가지의 환자로써의 의무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국민건강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가지 질문에 해결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전달 체제를 폐쇄식 체제보다 개방식 체제로 이루어 놓을때 활발한 추진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Leininger의 "An open Health Care System Model"에서와 같이 현재 환자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만나고 치료하고 질문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감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안전한 간호를 받으려면 모든 건강문제와 관련된 기술과 봉사가 지역사회와 건강필요자 중심이 되어 있는 개방식 체제내에 환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간단히 그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① 건강요구자 중심으로 건강간호 체제를 세우고 ② 치료비 경감과 같은 경제적 이점에 ③ 이용가능한 모든 전문인을 포함시키며 ④ 건강개념을 넓은 범위로 확대하며 ⑤ 단일 전문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건강요구자가 참여한 다양한 자원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結論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화시킬 커뮤니케이션을 찾고 제도화시킬 경우 결론적으로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된다.

① 모든 국민들의 건강상태는 그 수준에 있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② 건강 전문직에 대한 일반의 압력, 비평 등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③ 건강 전문직이 마음놓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④ 기계화 되어가는 인간간호는 줄어들고 병원은 참뜻에서 心身의 안위를 찾는 곳이 될 수 있다.

References

- 1) Hans Walter Wolff, "Anthropologic des Alten Testaments" Chr. Kaiser Verlag, München 1973, 文惠錫譯, 1976, p.248.
- 2) Hubbard, William; *Health Knowledge, The Health of America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Printice-Hall, 1970, p.103.
- 3) 동아 새 국어사전, 1976, p.178.
- 4) Hans Walter Wolff Ibid. p.254.
- 5) Ibid. p.254.

Bibliography

- Anold, Mary; *Administering Health Services, Issues and Perspectives*, New York: Aldine-Atherton, 1970.
- Dubcs, René; *Man, Medicine and Emironment*, New York Praeger, 1968.
- _____; *Man Adapting*.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1972.
- Frankl, Victor; "The Significance of Meaning for Health"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 Enncs, Howard; "A Crisis of Conscience in Health Care"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58 : 1812, October, 1868.
- Quinn, Nancy & other; "The Patients Bill of Rights" *Nursing Outlook* Apr. 1974, p241~244.
- Meadows, D.M & other's report; "The Limit to Growth" 金昇漢譯.
- Tillich, Paul; "The Meaning of Health" David Belgum(ed)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67.